#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 심 사 보 고 서

2024. 10. 2.

사회건설위원회

## 1. 심사경과

가. 발의일자: 2024년 9월 13일

나. 발 의 자: 이순우 의원 외 3명

다. 회부일자: 2024년 9월 23일

라. 상정일자: 제255회 영등포구의회 임시회

사회건설위원회 제1차 회의(2024. 9. 30.) 상정 의결

## 2. 제안설명의 요지(제안설명자: 이순우 의원)

가. 제안이유

❍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나. 주요내용

❍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 보험가입, 가입대상자, 보험계약의 당사자(안 제4조 ~ 제6조)

❍ 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 제9조)

❍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10조 ~ 제12조)

❍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행규칙(안 제13조 ~ 제14조)

## 3. 전문위원 검토보고의 요지(전문위원: 이수형)

❍ 본 조례안은 학교 안팎으로 활동성이 많은 청소년 시기에 관내 등록된 장애청소년의 예기치 못한 사고 발생 대비, 상해단체보험 가입으로 의료비 지원 등을 위한 근거를 마련하고자 발의된 안건으로,

❍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 안 제2조와 제3조에서는 상해보험을 지원받는 장애청소년의 범위를 규정하고 구청장의 책무를 명시하였으며,
- 안 제4조 ~ 제6조에서는 보험가입 및 가입대상자, 보험 계약의 당사자를 규정함.
- 안 제7조 ~ 제9조에서는 보험기관 선정 방법에 대해서 명시하고, 보험계약체결을 위해 고려할 부분과 보험료의 보장기준을 제시하였으며,
- 안 제10조 ~ 제12조에서는 보험료 납부, 보험금 청구 방법과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함.

❍ 검토 결과

- 청소년 시기 급속하게 성장하는 신체적 변화 등과 함께 이에 수반되는 동작의 서투름은 자칫 부주의로 인한 각종 불의의 사고에 노출되는 빈도 또한 늘어날 수 밖에 없으며, 각종 사고는 의료비와 직결되어 경제적 부담에도 영향을 미칠 수 밖에 없는 것이 현실임. 따라서 상해보험 가입으로 앞서 기술한 문제의 대비책을 강구하면 될 것으로 보임. 그러나 장애인들의 상해보험 가입은 보험회사의 보험 가입 거부를 경험한 장애인들이 비장애인에 비해 쉽지 않다는 인식이 있어 원활한 보험 가입에 제약사항이 있음을 체감할 수 있음.
- 「장애인차별금지 및 권리구제 등에 관한 법률」 제17조에 의하여 정당한 사유 없이 보험가입 청약 거절 등의 부당한 차별의 사례는 많이 줄어들고는 있으나 보험가입은 국가가 아닌 보험회사와 체결하는 사적 계약임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로 보임.
- 따라서 안 제3조에서는 구청장의 책무를 규정하여 우리 구에서 장애청소년들이 제약 없이 마음껏 사회활동에 참여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규정하였고,
- 안 제4조에서는 장애청소년들의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예산지원의 근거를 마련함.
- 안 제8조에서는 장애청소년에 필요한 보장범위, 보장 금액 등 매년 변동될 수

있는 세부적인 내용을 고려하여 보험계약 체결을 규정함.

- 안 제11조에서는 보험기관과 피보험자 양자 간의 보험금 청구 방법을 명시하였으며,
- 안 제12조에서는 보험금 지원 제외 대상을 규정하여 피보험자 자격기준을 정확히 하고 보험금 부정 수령 등에 대하여 규정하였음.
- 장애청소년 상해보험가입 지원은 서울시 2개 자치구에서 시행하고는 있으나 조례 제정으로 예산 지원의 근거를 마련한 자치구는 없으며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제2항에 따라 보건복지부와 협의 및 조정 완료됨.
- 따라서 우리 구의 보험료 부담으로 장애청소년에게 의료비를 지원하고, 상해로 인한 보장은 타 보험과 중복 보장도 되는 해당 사업의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됨.
- 본 조례안은 조례 제정의 취지가 타당하고 상위 법령에 저촉됨이 없는 것으로 사료됨.

## 4. 심사결과: 원안 가결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이순우 의원 대표발의)

| 의 안 번 호 | 401 |
|---|---|

발의연월일: 2024. 9. .

발 의 자: 이순우、차인영、이성수 전승관 의원(4인)

## 1. 제안이유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가. 목적, 정의, 구청장의 책무(안 제1조 ~ 제3조)

나. 보험가입, 가입대상자, 보험계약의 당사자(안 제4조 ~ 제6조)

다. 보험기관의 선정, 보험계약체결, 보험료 보장기준(안 제7조 ~ 제9조)

라. 보험료 납부, 보험료 청구, 보험금 지급 제외(안 제10조 ~ 제12조)

마. 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시행규칙(안 제13조 ~ 제14조)

## 3. 제정안: “별첨”

## 4. 참고사항

가. 관계법령: 「장애인복지법」, 「사회보장기본법」

나. 예산조치: 비용추계서 첨부〔별첨1〕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조례 제 호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성장기 사고의 위험성이 높은 장애청소년들이 각종 불의의 사고에 대비할 수 있도록 상해보험을 지원하여 장애청소년과 그 가족들에게 복지안전망을 제공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장애청소년”이란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에 주소를 두고 거주하고 있는 9세부터 24세의 「장애인복지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항에서 규정한 사람을 말한다.

2. “보호자”란 친권자, 법정대리인, 후견인 및 그 밖의 자로서 장애청소년을 보호하고 있는 자를 말한다.

제3조(구청장의 책무) 서울특별시 영등포구청장(이하 “구청장”이라 한다)은 상해보험의 지속적이고 안정적인 시행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보험가입) ① 구청장은 장애청소년의 불의의 사고의 위험을 대비하기 위하여 예산의 범위에서 보험에 가입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보험에 관한 일반적인 사항은 보험약관에 따른다.

제5조(가입대상자) 가입대상자는 제2조제1호에 따른 사람으로 한다.

제6조(보험계약의 당사자) 상해보험 계약의 당사자는 구와 계약을 체결한 기관으로 보험회사 또는 공제회(이하 “보험기관”이라 한다)를 말한다.

제7조(보험기관의 선정) 상해보험 가입을 위한 보험기관의 선정은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에 따른다.

제8조(보험계약체결) 구청장은 매년 가입대상, 보험기간, 보장범위, 보장금액, 보험료 등을 고려하여 보험계약을 체결하여야 한다.

제9조(보험료 보장기준) 보험의 보장기간, 보험료, 보장금액 등 세부적인 사항은 구청장과 보험기관 간 계약 체결 시 따로 정한다.

제10조(보험료 납부)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가입에 따른 보험료를 예산의 범위에서 제7조에 따라 선정된 보험기관에 납부한다.

제11조(보험금 청구) ① 장애청소년이 불의의 사고발생 및 보험금을 청구할 사유가 발생한 때에는 피보험자 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직접 보험기관에 보험금 청구를 하여야 한다. 다만, 미성년자는 제2조의 보호자가 신청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청구를 받은 보험기관은 피해 내용을 확인 후 구와 체결한 계약 및 약관에 따라 피보험자에게 보험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12조(보험금 지원 제외)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 보험금 지원 대상에서 제외한다.

1. 피보험자가 사고일 현재 주민등록상 타 시·군·구로 전출한 경우
2.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험금 지급을 요청한 경우
3. 그 밖에 법령 또는 보험약관에서 제한하는 경우

제13조(보험증권의 확인 및 관리) ① 구청장은 상해보험에 대하여 보험기관과 계약을 체결한 때에는 보험증서에 기재된, 피보험자, 보험금액, 보험료,

보장기간,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을 확인하여야 한다.

② 구청장은 보험증권 및 관계서류를 보관·관리하여야 한다.

제14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장애청소년 상해보험 지원 조례안 비용추계서

1. 비용발생 내역 : 관내 9세~24세 등록 장애청소년

2. 비용추계 기준 : 2023년 기준 관내 9세~24세 등록 장애청소년 625명

3. 비용추계 상세내역

○ 2026년부터 매년 10% 증액 편성

4. 비용추계 결과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세입 | ○ 구비 | 7,000 | 7,700 | 8,470 | 9,317 | 10,248 | 42,735 |
| | ○ | - | - | - | - | - | - |
| | 소계(a) | - | - | - | - | - | |
| 세출 | ○ 보험료 | 7,000 | 7,700 | 8,470 | 9,317 | 10,248 | 42,735 |
| | ○ | - | - | - | - | - | - |
| | 소계(b) | - | - | - | - | - | - |
| □ 총 비용(a-b) | | 0 | 0 | 0 | 0 | 0 | 0 |

5. 재원조달 방안 (단위 : 천원)

| 구분 \ 연도 | | 1차년도 | 2차년도 | 3차년도 | 4차년도 | 5차년도 | 합 계 |
|---|---|---|---|---|---|---|---|
| 국비 | | - | - | - | - | - | - |
| 시비 | 지방세수입 | - | - | - | - | - | - |
| | 세외수입 | - | - | - | - | - | - |
| | 지방채 등 | - | - | - | - | - | - |
| 민간 | | - | - | - | - | - | - |
| 구비 | | 7,000 | 7,700 | 8,470 | 9,317 | 10,248 | 42,735 |
| 합계 | | 7,000 | 7,700 | 8,470 | 9,317 | 10,248 | 42,735 |

6. 추가의견 : 없음

7. 작성자

| 작성자 이름 | 의회사무국 정책지원팀 |
|---|---|
| 연 락 처 | 02-2670-7849 |